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5. 11.

제안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 경과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	경과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8384호)	김위상	2025. 2. 24.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5. 7. 1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2391호)	김소희	2025. 8. 26.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2025. 11. 1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나.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5. 11. 20.)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25. 11. 24.)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에 대해 억제시설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조치의 적정성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청의 제재 처분이 자의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음.

또한, 사업자가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신고나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규정이 없고, 이와 같은 제재처분의 기간에 대한 상한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처분 기준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비산먼지 억제 조치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신고 의무 및 시설 설치 의무 위반 시 사업중지 또는 시설 사용중지·제한이 가능하도록 제재 규정을 정비하며, 제재처분의 기간 상한을 6개월 이내로 설정함으로써 법 집행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위임하여 명확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43조제1항).

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 등의 사용중지·제한이 가능하도록 제재 규정을 신설·정비하고, 제재처분의 기간 상한을 6개월 이내로 설정함(안 제43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전단 중 “비산먼지의”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산먼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을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①비산 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고 <u>비산먼지의</u>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① ---- ----- ----- ----- ----- ----- ----- ----- ----- <u>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산먼지의</u> --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u>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u>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	④----- ----- ----- ----- ----- ----- ----- ----- ----- ---- <u>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u> <u>지 아니한</u> -----

는 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
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
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⑥·⑦ (생 략)

-----.

⑤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
사·시장·군수·구청장은 비
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
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

1.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또
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
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
니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⑦ (현행과 같음)